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제정 2019.10.1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계획, 시행, 분석, 평가, 환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수요자 만족도는 교육 수요자인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전반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제3조(분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와 '스쿨(학과) 및 부서 차원의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2장 대학차원의 만족도 조사

제4조(대상 및 목적) ① 대학차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교육서비스 등의 만족도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졸업생 역량의 업무 적합도 등을 조사하여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여 대학 전반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조사 주기 및 주관부서) ①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조사는 1년 단위로 조사하며 재학생은 1학기말, 졸업생과 산업체는 2학기 중 실시한다. 그 외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필요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는 성과관리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경우에 따라 조사 시행, 결과분석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조사 실시, 결과 분석 및 공유, 개선 방안 마련, 환류 및 사후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조사계획수립) 주관부서는 만족도 조사의 목적, 대상, 시기 및 일정, 방법, 항목 등을 포함하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제7조(조사 실시) ①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대면, e-mail, 온라인설문, 우편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② 재학생 및 졸업생은 교육과정, 학생서비스, 교직원, 물리적 환경, 전반적 만족도, 접근용이성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활과 대학발전을 위한 기타 항목을 조사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는 우리대학 졸업생의 역량 및 산학협력 관련 만족도 분석 등을 조사한다.

제8조(결과분석 및 공유, 개선방안 마련) ① 조사 실시 후 분석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 및 스쿨(학과)(학과)에 공유한다.

② 각 부서와 스쿨(학과)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환류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각 부서 및 스쿨(학과)의 사업계획서에 환류 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② 장기 과제의 경우,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대학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 ①항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④ 주관부서는 개선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학년도말 최종 이행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교육 만족도의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무위원회에서 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조사계획 수립, 조사결과 분석,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① 만족도 조사 결과는 스쿨(학과)(학과) 및 행정부서 사업계획,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교육과정 의견수렴, 각종 프로그램 수요 분석, 각종 평가지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전체 내용이나 요약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3장 부서 및 스쿨(학과) 차원의 만족도 조사

제12조(대상 및 목적) 부서 및 스쿨(학과) 차원의 만족도 조사는 관련 수혜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등)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의 서비스와 스쿨(학과)의 유·무형의 교육서비스, 교육과정, 교육환경,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부서 및 스쿨(학과)은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부서 및 스쿨(학과)의 필요에 따라 만족도 조사의 목적, 대상, 시기 및 일정, 방법, 항목 등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해당 부서 및 스쿨(학과)의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제14조(결과 분석 및 환류) 분석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해당 부서 및 스쿨(학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대학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서에 요청한다.

제15조(관리) 부서 및 스쿨(학과)이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는 그 시기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류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관리한다.

#### 제4장 공통사항

제16조(기타) 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